

2021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
-포스트코로나대응형-

지식재산(IP) 기반 디지털혁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사업안내서

2021. 2.

- 목 차 -

I. 개요	1
II. 지원요건	2
III. 지원내용	3
IV. 사업체계	5
V. 선정평가	7
VI. 유의사항	8

1. 배경 및 목적

-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산업 선제 대응을 위하여 관련 지역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 발전 가능한 신규인력을 고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

2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지식재산(IP*)기반 디지털혁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
 - * IP(Intellectual Property)란 : 특허, 상표,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약자
 - ** 2021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
- 사업목표 : 청년 미취업자 30명 취업(중소기업 30개社 선정)
- 사업기간 : 2021년 1월 ~ 2021년 12월
- 주최기관 : 행정안전부, 인천광역시
- 주관기관 : 인천지식재산센터
- 지원대상 :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
 - (기업요건) 포스트코로나(비대면·디지털산업) 관련 중소기업
 - * 코로나 관련 변화예상 영역 기업(헬스케어, 교육, 교통, 물류, 제조, 환경, 문화, 정보보안 등)
 - ** 기존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(비대면)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기업 등
 - (채용요건) 만 39세 이하 청년 및 포스트코로나 관련 직무로 신규채용
 - * '21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(채용당시 또는 차후 인천시 주민등록要)
 - ** 비대면·디지털 산업(AR/VR, AI, ICT, 클라우드, 빅데이터 등) 내 단순노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(경영, 생산기술, 연구개발 등)
- ※ 기업 및 채용요건을 충족 못할 시, 선정취소가 가능

“포스트코로나에 선제대응하는 청년일자리 창출”



청년 인건비 지원

역량 강화 지원·직무교육 자격증 취득



청년 역량 발전

포스트코로나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



기업 및 청년 동반성장

1. 기업 요건

- 포스트코로나* 관련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**
 - *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·디지털 산업/직무분야
 - *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
- 기존 산업 분야에서 비대면·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기업
 - * 코로나 관련 변화예상 영역 기업(헬스케어, 교육, 교통, 물류, 제조, 환경, 문화, 정보보안 등)

2. 청년 요건

- '21. 01. 01.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('81. 01. 01 이후 출생)
- 사업 참여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유지가 가능한 자
 - 타 지역 거주자는 참여기업과의 근로계약 이후 1개월 이내 전입
 - * 다만, 필요 시 청년의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 지역 거주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
- 채용일 기준 미취업자(실업자·비경제활동인구) 및 이에 준하는 자
 - 사업공고 이전 '21년 신규채용을 이미 완료한 경우, 채용당시 위 기준에 준하는 지 확인
- 채용 직무범위가 포스트코로나(비대면·디지털산업) 관련 직무인 자

<포스트코로나 직무 유형>

유형	세부내용
비대면 사업영역 직무	온라인(기업 홈페이지/유튜브/SNS 등)콘텐츠 제작·관리, 온라인 플랫폼 구축, 비대면 고객지원 업무 등 온라인 특화 분야 * 기존 산업분야(제조, 농림어업 등)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무도 가능
디지털 사업영역 직무	어플리케이션·소프트웨어 개발,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, 클라우드, 증강/가상현실(AR/VR), 정보통신기술(ICT) 등 디지털 특화 분야

- 근로조건이 다음 내용에 부합하는 자
 - (근로계약)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(참여기업과 직접계약)
 - (보험적용)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
 - (근로시간)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인 자
 - (임금수준)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
 - (근태관리) 지문, 시스템, 출퇴근 근로카드 등에 의한 근태 관리

Ⅲ

지원내용

- ① 신규채용 청년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(연간 최대 20백만원)(기본)
- 채용인력 1인 월 최대 2백만원, 최대 10개월 이내 인건비 산정(21년도 내)
 - (인건비 구성항목)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에 한함
 - (지원금 산정기준) 인건비 지급합계*/10%(기업부담분) = 지원가능금액
- * 지급합계 = 근로자부담 공제세액 합계 + 실수령액(원 단위 절사)

<인건비 보조율(지급예)>

(단위 : 원, 월)

구분(월 인건비)	지원금액	기업부담(10%)	비고
2,200,000 이하	최대 2,000,000	최대 200,000	인건비 10% 기업부담
2,200,000 초과	최대 2,000,000	200,000 ↑	초과분 기업부담

- * 인건비 지급액 : (월 인건비 지급합계)/10%(기업부담)를 계산하여 인건비 지원
 - ** 예1)인건비 2,000,000원 기준 1,800,000원 지원(200,000원 기업부담)
 - *** 예2)인건비 3,000,000원 기준 2,000,000원 지원(기업부담 비율인 10%를 적용하면 2,700,000원 지원이나, 월 최대 2백만원 한도로서 초과분은 기업이 부담)
 - 매월 기업의 先지출내역 증빙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인건비 後지급
 - 사업공고 이전, 21년도 기준 신규채용 인력도 소급하여 지급가능
 - 기업부담 공제세액(4대 사회보험료 및 기타 세액)의 경우 기업에서 자체부담
- ※ 채용인력 1인에 대해 동일·타 부처 주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

② 모듈형 추가지원(최대 3백만원)(추가)

- 기본지원인 인건비 지원 이외, 다음 내용에 대한 추가지원 실시
- 모듈형 추가지원은 선정된 기업의 추가신청 및 주관기관의 검토 후 적정여부와 예산상황에 맞추어 지원함
- 추가지원금은 신청내용에 따라 개별 참여기업/청년 별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-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직무교육 등 추가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수렴 및 반영
- 추가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, 참여기업의 선 지출이후 후 지급 실시

1) 참여청년 역량강화 비용지원

- 포스트코로나 관련 또는 직무범위 내 온·오프라인 전문교육/자격취득 비용
 -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 또는 현장직무교육 등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
- * 관련 세부교육계획 및 수료내용에 대한 결과제출필요

2) 참여기업 지식재산권(IP) 확보지원

- 참여기업의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비용 지원

*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에 대한 출원 및 등록비 지원

** 선행기술조사, 출원, 중간사건(OA), 등록, 연차료, 기술이전비 등 권리화 비용

*** 권리화 비용에서 발생하는 부가세(VAT)는 기업부담

※ 모듈형 최대 3백만원 이내, 항목 간 비용 조정을 통해 모두 지원가능

※ 연간 총 지원금액은 2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(인건비, 모듈형 총계)

③ 참여청년 종합교육 프로그램(필수)

- 참여청년 역량강화 비용지원^{모듈형①} 외, 사업 주관기관 차원의 종합교육 지원

- 세부교육 운영은 외부강사 또는 용역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교육제공

- 총 20시간 내외의 종합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여, 기업 내 핵심 인재로 발전하기 위한 직무 및 개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

- 기업 및 청년의 별도 자부담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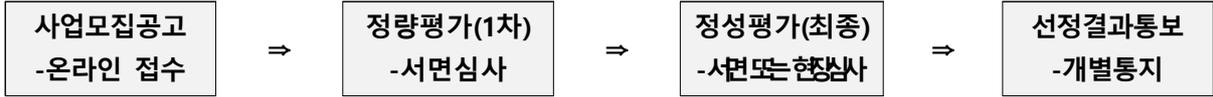
<참여청년 종합교육 프로그램(안)>

교육구분	세부내용	시간	방법
업무수행	엑셀, 파워포인트, 문제해결/성과관리 등 업무일반	총 20시간 내외 커리큘럼 진행	집합교육* *코로나19 관련 정부지침에 따라 일정 및 방법조정
조직/사회경제	(일반) 직업의식, 자기계발 교육		
	(심화) 사회트렌드, 경제/금융 교육		
지식재산권	(일반) 지식재산권 이해와 중요성 교육		
	(심화) 선행기술조사 실습교육		

※ 교육운영은 집합교육 또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

※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을 신규채용완료 시, 본 지원사업의 내용 및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고지하여야 함

1. 지원절차



㉑ 신규채용실시 및 채용완료					
채용계획일치(청년업무내용)	⇒			인건비 지원	⇒ 지원종료
" 불일치(채용내용 재제출)	지원적정여부 주관기관 검토	⇒	검토 승인	↑	
참여청년 중도퇴사 - 대체인력 채용계획 제출			검토 비승인	↗	

㉒ 추가지원 수요조사 실시					
참여청년 역량강화	신청서 제출 및 주관기관 검토	⇒	지원 선정	추가지원	⇒ 결과제출
참여기업 IP확보지원			지원 불선정	인건비 지원계속	

○ 지원금(인건비) 지급절차

- 신규채용이 완료된 경우, 참여기업의 신청을 통해 인건비 지원 실시
- 인건비는 매월 기업의 선 지출 이후, 증빙을 바탕으로 주관기관에 신청
 - * 제출서류 : 지원금 지급 신청서, 임금지급 증빙자료(급여대장, 임금내역 등), 근로계약서, 참여청년 주민등록등본, 기업명의 통장사본(최초 1회)
- 청년업무내용 등이 일치하는 경우(참여기업의 사업신청 당시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과 실제신규채용 비교), 별도 추가심사 없이 지원금 교부가능
- 신규채용 내용이 당초 계획과 불일치하는 경우, 해당내용으로 지원이 적정한지 주관기관의 검토 및 승인 후 인건비 지원 가능
- 참여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, 대체인력에 채용계획을 제출하고 계속지원이 적정한지 주관기관의 검토 및 승인 후 인건비 지원 가능

<인건비 지급절차>

①기업 채용공고 실시	②청년인력 채용완료	③지원금 신청	④지원금 지급
'21년 신규채용공고	채용명단 통보 *채용인원 및 직무유형	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지원금 신청 *관련증빙 제출	주관기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
기업	기업 ⇒ 주관기관	기업 ⇒ 주관기관	주관기관 ⇒ 기업

○ 추가지원금 지급절차

- 주관기관은 참여기업 대상으로 추가지원금 수요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
- 참여청년 역량강화 및 지식재산 확보지원에 대한 지원내용 중, 참여기업과 참여청년이 모두 참여하여 추가지원 받고자 하는 내용을 함께 작성
- * 제출서류 : 추가지원금 신청서, 선정이후 기타 증빙서류(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, 견적서,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, 교육내용 등)

<추가지원금 지급절차>

①추가지원 수요조사 실시	②추가지원금 신청서 제출	③추가지원 선정평가	④결과통보 및 추가지원
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대상	참여기업과 참여청년이 논의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상세히 작성	추가지원 신청내용에 대해 주관기관의 선정평가 실시	선정평가 결과 통보 및 추가지원금 지급 *향후 결과보고서 제출
주관기관	기업 ⇒ 주관기관	주관기관	주관기관 ⇒ 기업

2. 추진일정

추진내용	추진일정			
	1/4	2/4	3/4	4/4
- 사업 모집공고 및 접수	○			
- 참여자 선정평가 및 참여자 간담회	○	○		
- 참여자 지원(인건비지원, 추가지원, 종합교육)		○	○	○
- 지원내용 모니터링		○	○	○

1) 모집공고 및 접수

- 1차 정기접수 : '21. 2. 18(목) ~ 3. 18(목), 4주간
- * 목표달성 및 예산소진까지 추가 모집공고 실시 가능
- 참여 신청서 이메일 제출
- * 접수마감일 23:59까지 도착분 한함,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
- ** 인천지식재산센터 이준규 행정연구원(ljk@incham.net / 032-810-2876)

2) 참여자 선정평가 및 간담회

- 평가기간 : '21. 3. 19(금) ~ 3. 31(수) 이내
- 선정평가 이후 1주일 내, 선정결과 이메일 통보
-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설명 간담회 개최 예정

3) 참여자 지원

- 인건비지원, 추가지원, 종합교육 지원은 연중 수시

4) 사업점검 및 마감

- 참여자 지원내용 점검 및 실적취합 등 사업모니터링

○ 1차 정량평가(서면/현장평가)

- 기업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적격여부 및 기본 정량평가 실시

* 기본 서면평가를 진행하며, 필요시 현장방문 평가를 진행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고유식별정보 수집,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등 확인

○ 2차 정성평가(서면평가)

- 1차 평가결과, 부적격 대상을 제외하고 최종 선정심의위원회* 개최

* 기업경영 및 고용, 지식재산권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 담당자 등 내·외부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서면평가 실시

○ 심사기준 및 배점(안)

구분	심사기준		배점	심사항목
정량	기업 경영사항	매출증가율	5점	- 10%이상(5), 9~3%(4), 2~0%(3), 0%미만(2)
		부채비율	5점	- 100%미만(5), 101~200%(4), 201~300%(3), 301%이상(2)
		정규직 비율	5점	- 90%이상(5), 89~80%(4), 79~70%(3), 69%이하(2)
	기술경영사항		5점	- 지식재산권(1건 이상 출원 또는 등록) 보유여부 - 또는, 기업부설연구소/전담부서 보유여부
정성	(청년) 신규채용 필요성	20점	- 신규채용에 대한 필요성 및 직무수행계획 구체성 등 현재(향후) 사업장에 신규인력이 필요한 내용 평가	
	(청년) 채용인력 성장성	20점	- 채용인력에 대한 교육/업무범위 및 역량향상 촉진 방안 등 신규채용(예정)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 평가	
	(기업) 참여기업 성장성	20점	- 참여기업의 사업아이템 및 사업 분야에 대한 향후 성장성 및 비전 등 시장경쟁력 평가 - 지식재산권경영 및 기타 기술경영 사항 평가	
	(청년·기업) 포스트코로나 관련성	20점	- 포스트코로나(비대면·디지털) 관련 참여청년의 직무내용 및 참여기업의 사업분야 등 관련성 평가	
가점		5점	- 청년친화강소기업('20, '21 기준)*고용노동부 선정	
합 계		100점(가점 포함 105점)		

- 기업경영사항 평가 시, 신규창업기업('20, '21년) 및 1인 창업기업이 관련 증빙자료(재무제표) 또는 수치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점수를 적용

* 매출증가율 3점, 부채비율 5점, 정규직 비율 4점

** 재무제표 평가는 '18, '19년도 지표를 적극 검토(코로나19로 인한 '20년도 피해 감안)

○ 평가결과에 따른 처리

- 총 평가점수 100점 만점 중, 70점 이상 대상기업 고득점 순 선정

- 선정기준을 부합한 대상자는 예비선정 하여 향후 추가지원 여부 검토

1. 기업 제한사항

-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인력 신규채용 1개월 이후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

<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(예시)>



- ※ 위 예시의 경우 사업 참여 확정일 1개월 이전부터(02.05.) 청년 채용일 1개월 이후까지(04.10.)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
- 소비·향락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
 -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
 - * 부동산업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, 무도장 운영업
-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
 - *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
-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 - * 근로기준법 제43조의2(체불사업주 명단 공개)
- 지원금 지급제한 사업주(12개월)
 - *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)
-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12개월)
 - *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(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)
- 채용인력 1명에 대해 동일·타 부처 주관 인건비 지원사업을 수혜 받는 사업장

2. 청년 제한사항
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
- 대학 및 고교 재학생 및 병역특례자
- 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해당되는 경우
- 동일한 사업장에서 “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”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경우
- 이전 다른 사업장에서 “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”에

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경우

-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
 -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는 가능(정규직 인원의 경우)
- 단순일자리에 해당되는 경우
 - 신규채용 청년인력의 업무범위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
 - 전화·방문고객 단순상담, 영업점 단순 접객·판매, 기타 단순노무 등
- 동일 참여청년을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(자진퇴사 포함)
 -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등
-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
 -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함

3. 기타 제한사항(기업 및 청년)

- 사업 참여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요건에 부합하는 신규 청년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, 그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더 이상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-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
- 국세 및 지방세 상습체납 및 이에 준하는 경우의 사업장
-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(대표자 1인 기업의 경우 제외)
-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
- 부도, 폐업, 신용불량 등 지속적인 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
- 사업 참여 신청 이후, 참여기업의 소재지 이전 등 사업 참여요건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변경사항을 주관기관에 공유하지 않는 경우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장
- 3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예정 사업장
- 공공기관 및 공기업
 - *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
-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기타 유의사항 및 사업취지에 비추어 부적합한 경우